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10.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Ⅲ. 주요내용

- 학생들이 원하는 직군 및 직능에 대해 분석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함(안 제4조)
- 학생들이 원하는 직군 및 직능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센터에 부여함(안 제10조)
-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전·후에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사전 및 사후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원회에 효과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6. 2. 20. ~ 2. 24.(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508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설계와 자긍심, 재능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군 및 직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 1인의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축소·재편될 것이라는 전망¹⁾이 제기되는 한편,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유망 직군의 변화 등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1) Future of Jobs Report 2025 (2025년, 세계경제포럼 발표)

-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진로교육법」은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²⁾.
- 또한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역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³⁾
-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동향 분석 및 인기 직군·직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연구·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진로교육기본계획(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반영하여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교육 방향성 제시를 ‘진로교육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동향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및 체험활동을

2)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3조(책무)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진로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⁵⁾.

-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하여 매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표-1] '2025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 (조사 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 ▶ (조사 기간/방법) '25. 5. 16.(금) ~ 6. 13.(금) 온라인 조사
- ▶ (조사 대상)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37,408명
- ▶ (조사 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국가진로교육센터)
- ▶ (조사 내용) 학생 희망직업, 진로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원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80개 항목
- ▶ (자료 공개)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진로정보망(www.career.go.kr) 등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매년 ‘한국직업전망⁶⁾’을 발간하고, 고용 동향 및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를 연구·분석하고 있음.⁷⁾

4) 「진로교육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5)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2023 한국직업전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우리나라의 연구, 건설, 정보통신,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관련직, 영업·판매, 운전·운송, 단순노무를 포함한 농업 관련직 7개 분야 150개 직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 수록.

- 하는 일, 되는 길 등 일반적인 직업정보 외에 향후 10년 간(2021~2031년)의 일자리 전망과 이러한 전망의 주요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고자 함.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적극 참고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실효성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감이 사회 동향 및 직군·직능 분석 내용을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 센터의 업무(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제5호는 ‘최근 사회 동향 및 청소년 문화 분석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한 희망 진로 관련 교육 방향 연구 및 제시’를 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로교육법」 제16조는 교육감이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성·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포함한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⁸⁾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전국 단위의 진로교육 방향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국가진로교육센터(제15조)와 지역진로교육센터(제16조)의 업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8)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진로교육법」과는 달리, 현행 조례 제9조 및 제10조는 「진로교육법」 제16조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센터⁹⁾와 지역센터¹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음.

[표-2] 「진로교육법」 상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 업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조항	제15조	제16조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내용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 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체험 운영·지 원 등

- 이로 인해 기관별 업무 효율성 저하, 업무 범위의 모호성, 해석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조례상 ‘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제5호가 안 제4조 개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센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이러한 의견 역시 ‘센터’와 ‘지역센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로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기능을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10) 지역센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 자문(안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제2항제6호는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성과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진로교육의 사후 평가 결과는 이미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를 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후 평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 조치로 사료됨.

[표-3] 최근 3년간(2023~2025) 진로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¹¹⁾

지역	연도	학교급	참여 학생수 (명)	평균(결과) (점)	비고
서울	2023	초	710	4.07/5.0	
		중	928	3.71/5.0	
		고	895	2.85/5.0	
서울	2024	초	700	4.08/5.0	
		중	906	3.76/5.0	
		고	888	3.63/5.0	
서울	2025				보고서 작성중

11) 출처: (교육부) 초·중·고 진로교육 현황조사(학교 진로활동 참여와 만족도)

[표-4] 최근 3년간(2023~2025) 진로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개요

(단위: 명)

연도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	평균(점)
2023	26,929	9,934	326	14	4	4.71
2024	27,756	9,390	271	17	5	4.73
2025	28,385	7,708	190	5	6	4.7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

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